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3. 5. 31.(수) 14:00 배포 2023. 5. 31.(수)

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

- 新제도(IFRS17·K-ICS)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주요 계리적 가정**을 발굴, **가이드라인 제시**하여 보험회사 **재무제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**

- **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**를 **개최**하여 **의견 수렴**

'23년부터 **보험부채**를 **공정가치**로 **평가**하는 **IFRS17이 시행**됨에 따라,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,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**최적** 또는 **편향되지 않은 가정***으로 **보험부채**(BEL; Best Estimate Liability)를 **평가**해야한다.

*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

그러나, **IFRS17 시행 초기**에 보험회사가 **자의적인 계리적 가정**을 **사용**하는 등 **혼란**이 **발생**할 수 있다는 **우려**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**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**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주요 계리적 가정***에 대하여 **합리적인 가이드라인(案)**을 마련하였으며, '23년 제2차 **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****(5.31일)에서 동 **가이드라인**에 대한 **의견**을 **수렴**하였다.

*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(4.5일)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

** 참석기관: 금융당국, 회계기준원, 보험개발원, 보험연구원, 보험협회, 보험회사 등

<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>

실손의료보험*에서 **지속적**으로 **손실**이 **발생**하고 있음에도 **객관적·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**인 **가정**을 **사용**할 경우, **장래 이익**이 **발생**하는 것으로 **추산**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실손의료보험의 **갱신 시 보험료**가 과거 경험통계보다

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**가정**할 경우, 손실계약이 **이익계약**으로 **전환**되어 **보험계약마진**(CSM)이 **크게 산출**될 수 있다.

*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(급여 본인부담금 + 비급여)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

이에, 全 보험회사의 **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**를 **점검**한 후, 경험통계 등 **객관적**인 **통계**를 최대한 **활용**하고, **보험료 산출방식**과도 **일관성**을 **유지**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. **(별첨 참조)**

< 무·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>

국내 **무·저해지 보험***은 **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** 등 **최적가정 산출**에 필요한 **경험통계**가 **부족**함에 따라 **보험회사**는 다양한 **통계기법**을 **사용**하여 **경과 기간별 해약률**을 **추정**하고 있다.

*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

무·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**납입 중**에는 **환급금**이 **없거나 적고, 납입 후 환급금**이 **크게 증가**하므로 **가입자**가 **만기**까지 **보유**할 **가능성**이 높으나, **무·저해지** 보험의 **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**을 일반 상품보다 **더 높게 설정**할 경우, **이익**이 **많이 발생**하는 **상품**으로 **분류***될 수 있다.

* 무·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

따라서, **무·저해지** 보험의 **해약률**을 **표준형 보험**보다 **낮게 적용**하고, 상품구조에 따른 **계약자 행동 가정**을 **합리적**으로 **반영**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. **(별첨 참조)**

<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>

고금리 상품은 **계약자**가 **해약**을 **적게 하는 특성**이 있음에도 **저금리 계약**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**통합 산출**할 경우, 고금리 계약의 **해약률**이 **높게 적용**될 수 있다.

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**손실 계약**에 **해당**하므로 **해약률**이 **높게 산출**될 경우, **최선추정부채**(BEL)가 **작게 측정***되고 **보험계약마진**(CSM)이 **크게 측정**될 우려가 존재하였다.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**고금리계약**은 **일반계약**과 **구분**하여 **해약률**을 **적용**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. **(별첨 참조)**

*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(BEL)가 줄어드는 효과

<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>

보험회사는 보험상품 **계약 시점**에 보험료·보험금 등 **미래 현금흐름**을 **고려**하여 新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**보험부채 內 보험계약마진**(CSM)으로 **적립**하며, 당기 **보험계약 서비스 제공**의 **대가**로 旣적립된 **보험계약마진**(CSM)을 일정 비율* **상각**하여 **당기손익**으로 **인식**한다.

$$\text{* 보험계약마진수익인식}_t = \text{보험계약마진}_t \times \frac{\text{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}_t}{\sum_{k=0}^{n-t} \text{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}_{t+k}}$$

그러나, **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** 산출 시 **보장 서비스**만 포함하고, **투자 서비스**(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)를 **고려**하지 않거나, 보험계약 서비스에 **보장 위험**의 **발생 빈도**와 **반복 발생 정도**를 제대로 **반영하지 않을 경우, 초기**의 **상각률**이 높아져 **당기이익**이 **크게 인식**될 수 있다.

따라서 **보험계약마진 상각 시**에, 보험계약 서비스에 **투자 서비스**를 **포함**하는 등 **합리적**으로 **산출**하도록 **기준**을 **명확히** 하였다.

<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 >

보험회사는 **계리적 가정**의 **불확실성**으로 인한 **변동성**(위험)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**준비금**(버퍼)을 **보험부채 內 위험조정**(RA)으로 **적립**한 후, 매 **결산 시**마다 **위험조정**을 **재산출**하여 **기말·기시 증감액**(기시 위험조정 - 기말 위험조정)만큼 **상각**하여 **당기이익**으로 **인식**한다.

그러나, **기말 위험조정 산출**에 사용하는 **기초자료**를 **기시 위험조정**과 **달리 적용***하는 등의 방식으로 **기말 위험조정**을 작게 산출할 경우, **상각액**(기시 위험조정 – 기말 위험조정)이 **크게 계상**(☞ 당기이익 증가)될 수 있다.

* 기말 시점의 위험조정 계산 시, 기시 시점 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

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**위험조정 상각 시**, **기시 시점**과 **기말 시점**의 **기초자료**를 **동일**하게 **사용**하도록 기준을 확립하였다.

<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>

동 **가이드라인**의 **제정 목적**은 **재무제표**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계리적 가정**에 대한 **불합리**한 **요소**를 **최소화**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**혼란**을 **방지**하고 재무제표의 **신뢰성**을 **확보**하기 위함이다.

보험회사는 **동 가이드라인**을 통해 **자의적인 계리적 가정** 사용에 대한 **시장 우려**를 **불식**시키고, **신뢰성**과 **비교가능성**이 확보된 **재무제표**에 기반하여 **회사**의 **가치**를 **정당하게 인정**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.

금융위·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**보험회사**에 **미치는 영향**을 **평가**한 후 **최종(안)**을 **확정**할 계획이며, 보험업계에 **가이드라인**을 **제공**하여 빠르면 **'23.6월 결산**부터 **보험회사**가 이를 **적용***할 수 있도록 **추진**할 것이다. **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**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**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**할 수 있도록 **지도해나갈 계획**이다.

*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'23.9월말 결산부터 적용

또한,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**간담회**, **예실차*** **분석** 등을 통해 **계리적 가정** 관련 **이슈 사항**을 **지속적**으로 **발굴**하여 필요 시 **추가 가이드라인**을 **제시**할 것이다.

*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 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민 (02-2100-2964)
	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	책임자	실 장 정해석 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 곽정민 (02-3145-724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첨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(안)

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(현금유출) 산출기준(案)

◈ 각 사의 경험통계(예: 5년 이상)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(예: 5차년도)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(☞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)

◈ 이후 특정 기간(예: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)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*로 수렴

*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(단, 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)

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(현금유입) 산출기준(案)

◈ 각 사의 경험통계(예: 5년 이상)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(☞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)

◈ 이후 특정 기간(예: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) 동안 목표손해율*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

*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(사업비 포함) 비율 기준 100% 수준에서 결정

무·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(案)

◈ 무·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*

*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,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·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

◈ 납입완료 직전·후 해지유보·증가효과*(계약자 행동 가정) 반영 필요

*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“0”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

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(案)

◈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*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

*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(LTFR)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